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3선거구 문병훈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‘소규모재개발사업’과 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에서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설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더불어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와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